

# 감사원

## 주요구

제 목 수의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

소관기관 기획재정부

조치기관 기획재정부

내용

### 1. 업무 개요

기획재정부는 2021. 12. 3. ●●(대표자 A)과 “ㅊ 용역”(이하 “ㅊ 용역”이라 한다) 계약(금액 33,000,000원)을 체결하는 업무를 처리하였다.

### 2.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

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국가계약법”이라 한다) 제11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, 계약금액, 이행기간 등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·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되어 있다.

그리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 및 제30조 제1항 등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추정가격을 산정하고, 견적서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다.

또한 기획재정부는 전체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계약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사전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고, “ㅋ” 용역을 발

주하면서 2021. 12. 13. 용역 제공 업체로부터 견적서(견적금액 19,965,000원)을 제출받은 후 같은 해 12. 23. 견적금액과 같은 계약금액을 지급하는 등 ㅊ 용역과 유사한 용역을 발주할 때 정당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사전에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 상대방이 용역을 수행한 후 견적금액에 따라 계약금액을 지급하고 있다.<sup>1)</sup>

한편, 「국고자금 집행지침」(기획재정부 지침, 시행 2010. 10. 21.) 2-2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 및 계약 등에서 정한 정당한 채권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.

따라서 기획재정부는 ㅊ 용역을 발주할 때 사전에 추정가격 산정, 견적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구두로 용역을 발주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, 실제 계약을 이행한 당사자가 아닌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며 대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했다.

### 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

그런데 기획재정부는 2021. 12. 1. 개최되는 “ㅎ 개회식”에서 발표<sup>2)</sup>할 “끄”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면서 ㅊ 용역을 발주하기 위한 추정가격 산정, 견적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같은 해 11. 12. ■■(대표자 B)에 위 용역을 구두로 의뢰하였다.

이후 기획재정부는 “ㅎ 개회식” 종료 다음 날인 2021. 12. 2. ■■부터 추정 가격 1억 원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여성기업<sup>3)</sup>이자 영문본 제작 작업

1) 이 외에도 “ㅌ” 용역, “ㅍ” 용역 등 ㅊ 용역과 유사한 용역에 대하여 사전에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 상대방이 용역을 수행한 후 견적금액에 따라 계약금액을 지급하고 있음

2) 발표자: 기획재정부장관(경제부총리)

3) ●●은 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으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5)호에 따라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의 용역계약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

등 과업 수행에 일부 참여한 ●● 명의의 견적서(견적금액 33,000,000원)를 제출 받았고, 기획재정부는 이를 근거로 ●●과 체결한 용역 계약[계약기간: 2021. 12. 3.~12. 16.(2주)]을 체결하도록 요청하여 같은 해 12. 23. ●●에 용역 대금(33,000,000원)이 지급<sup>4)</sup>되게 하였다.

**관계기관 의견**      기획재정부는 “농 개회식”이 임박하여 의사결정이 긴박하게 진행됨에 따라 통상적인 업무 처리가 어려웠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는 등 계약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하였다.

**조치할 사항**      기획재정부장관은 앞으로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구두로 용역을 발주하고 결과물을 제출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실제 계약을 이행한 당사자가 아닌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(주의)

---

4) ●●은 2021. 12. 22. 기획재정부로부터 용역 대금 33,000,000원을 지급받고 이 중 영문번역 대가 2,750,000원을 제외한 30,250,000원을 같은 해 12. 24. ■■(B)에 자금이체